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화 : 490-33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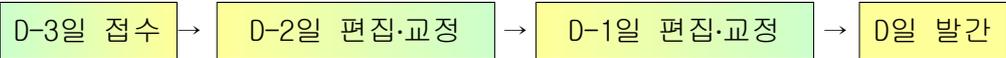
제1547호 2009. 6. 11.

공 고

제2009-45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09-45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457호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조문을 정비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유가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 하며,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 나.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변경(안 제1조)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에 따른 변경(안 제8조)
- 마. 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조문 정비(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131-701, 전화:02)490-3375, FAX:02)490-3704, E-mail : sjr@jungnang.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청소행정과(☎490-337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45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 사용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상표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이미지를 보존하며,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중소기업 공동상표 전용사용권 기준 마련

○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용사용권 취소) 구청장은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용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용규약을 위반하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제8조의3(중소기업 공동상표의 법적보호) 구청장은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중소기업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공동상표제정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131-701, 전화:02)490-3365, FAX:02)490-3656, E-mail : yjlee7189@jungnang.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지역경제과(☎490-33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